

제324회 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서

(박승진 의원)

2024. 6.

푸른도시여가국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3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관련 시설에 ‘역사성을 보유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애국지사,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구역 외에는 시신의
매장을 금지하고 있고, 도시공원 중 매장이 가능한
대상은 묘지공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이 역사성을 보유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제시한 묘지 설치 대상인 ‘애국지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향후, 문화예술인 등의 무분별한 묘지 설치 요구 발생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도심에 다수 위치한 우리시 역사공원 22개소에 묘지 시설이 설치될 경우 시민 휴식 공간 선택권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번 도시공원조례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보류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